

보도자료



	보도	2019.1.25.(금) 조건	<u>'</u> 배포		2019.1.24(목)	0 8 7	
th OLTL	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 효 선(02-2100-2801)		담당자		김 춘 규 사무관 (02-2100-2802)		
책 임 자	금감원 법무실 국장 장 진 택(02-3145-5911)				한 창 훈 팀장 (02-3145-5915)		

<u>제 목 :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한 「금융규제</u> 운영규정」 개정·시행

-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·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.

1. 추진 배경

- □ 금융위원회는 '18.12.19(水)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 「금융 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」을 **의결**하고 '19.1월중 발령·시행할 예정
 - 그간 금융위원회는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을 제정·시행('15.12.31) 하여,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·방식·절차를 마련하고,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음
 - 하지만,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
 - 이에,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 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- ①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**금융위원회의 사전통제 강화**(안 제9조의2 신설)
 - (현행)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 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
 - (개정)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행정 지도 심의·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
- ② 금융행정지도의 **연장횟수 제한**(안 제13조제3항)
 - (현행)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음
 - (개정)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
- ③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(안 제14조제3항 신설)
 - **(현행)**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
 - (개정)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
- 4 금융행정지도의 실태평가 강화 (안 제20조제2항 신설)
 - (현행) 금융규제의 운영실태평가시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 도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 - (개정)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

3. 제도개선 효과

- ①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
 - 금융위원회에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 심의 절차에 **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투명성을 강화**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**금융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
- [2] 금융행정지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
 - 매년 자체 평가시 법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법규화를 추진
 -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실태 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 하도록 함

4. 향후 일정

금융위원	회는 이	번 개정안	시행에	따라	행정	지도	심의위원회
위원 위촉	· 등 행	정지도 심	의절차 개	편('19.	1월중)	

□ 금융행정지도 등 **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**('19.3월)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**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 추진**(연중)



 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